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시그니처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26. 5.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시그니처자산운용(주) 운용본부는 2024.8.26.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 중 토지* 평가 시 CC감정평가법인 DD지점이 토지 가치 변동을 반영한 감정평가액(541억원)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존 558억원에서 541억원으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 "DDDDD"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관련 토지

회사는 2024.8.28. 착오로 인해 최초 토지 취득금액(449억원)과 금번 감정평가액(541억원)의 차액(92억원)을 기존 장부가액 558억원에 가산함으로써, 650억원으로 과대 평가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